

私學法人 所有財産의 收益性 提高를 爲한 調査 研究

崔 志 雲*

- I. 序 論
 - 1. 問題의 重要性
 - 2. 本 研究의 目的
 - 3. 研究의 範圍와 限界
 - II. 理論의 背景: 假說의 論據
 - 1. 私學의 概況
 - 2. 收益用 基本財産의 特性: 規模 및 收益의 脆弱性
 - 3. 基本財産의 收益性 提高를 위한 몇가지 可能性의 想定
 - III. 研究方法
 - 1. 研究對象
 - 2. 道具(質問調査紙)
 - 3. 資料의 處理와 解釋
 - IV. 結果와 解釋
 - 1. 調査道具의 配付와 回收
 - 2. 應答者 背景
 - 3. 結果 및 解釋
 - V. 結 論
 - 1. 要 約
 - 2. 提 言
- 參考文獻
附 錄

I. 序 論

1. 問題의 重要性

1977年 1月 現在를 基準으로 公·私立間 中等學校 學生 1人當 教育費의 差額을 算出해 보면 다음과 같이 13,007원으로 나타난다.¹⁾

A. 公立校學生 1人當 教育費=116,359원 國庫支援費(1人當) 36,614원 公納金(1人當) 79,745원
B. 私立校學生 1人當 教育費=103,352원 國庫支援費(1人當) 4,984원 公納金(1人當) 98,369원
C. 差額(A-B)=13,007원

公·私立間에 있어서 財政上의 均衡을 維持하려면 이 差額만큼의 財源을 달리 補充해 주지 않으면 아니될 것인데 그 總額은 約 203億원에 達한다. 行政當局의 立場에서 보면 私學法人體가 收益用 基本財産에서 每年 이 額數만큼 補充해 줄 것을 바라고 이러한 財政政策을 取하

* 文理科大學(서울) 副教授

1) 韓國私學財團聯合會, 教育正常化를 爲한 私學財政問題解決의 方向, 1977. pp.9~11.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私學法人體가 保有하고 있는 基本財産의 構成面이나 實際의 收益面에서 볼 때, 이와같은 差額을 每年 充當해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形便에 놓여 있다.

實際로 私學財團聯合會가 1976년에 暫定的으로 推計한 바에 依하면, 約 1,112億원에 達하는 法人體 所有 收益用 財産中 實際로 收益을 낼 수 없는 財産이 全體의 約 6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中에서도 比較的 높은 收益을 期待할 수 있는 것은 約 24%에 不過한 것으로 되어 있다.²⁾ 이것으로 볼 때, 이러한 差額(203억원)을 法人體가 勘當하기란 매우어렵다고 判斷된다. 더욱이 私學이 우리나라 全體教育에 折半(50%)以上の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點과³⁾ 中學校의 平準化 施策과 高校聯合入試考査制로 인하여 學校의 入學選擇權이 學父母에게 주어 지지 않고 있는 點등 現狀況에서 볼 때 이와같은 私學의 財政上의 不均衡을 어떻게든지 是正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因하여 全教育에 미치는 惡影響의 범위는 매우 크다고 아 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우선 私學法人體가 所有하고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의 收益性을 提高시키는 方案을 講究하는 일은 公·私立間의 財政上의 不均衡을 是正해 나가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私學의 正常化와 同時에 全韓國教育의 發展에 있어서도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點에서 매우 意義있는 課題라 할 것이다.

2. 本研究의 目的

以上에 指摘한 問題의 重要性에 비추어 本研究에서는 各級私立學校法人體 運營에 直接 關與하고 있는 人士들로부터 法人所有 收益用基本財産에 관한 運營實態資料와 意見들을 널리 蒐集하고 分析하여 收益性을 提高시키기 위한 基礎的인 諸方案들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法人所有基本財産의 收益性을 向上시키는데 있어서 그 可能性의 限界, 方案 및 附隨되는 對策 등을 豫意的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3. 研究의 範圍와 限界

本研究의 考察對象의 範圍는 私立學校法人體가 所有하고 있는 財産中 收益用基本財産에 局限하였고 其外 財産目錄은 여기에서 除外하였다. 그리고 初·中等·高等教育法人中 主로 中等學校法人體를 重點적으로 다루었다.

資料蒐集에 있어서는, 法人體運營에 直接關聯되는 人士中 可及의 實務責任을 지고 있는 財團事務擔當者를 中心으로 하였다. 그 主要理由는 財産運營에 가장 밝고 反應에 比較的 客觀性을 維持할 수 있겠기 때문이라 判斷되기 때문이다.

2) 上掲書, p. 45

3)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1977年版, 參照.

또한 本研究의 目的을 보다 더 充實하게 達成하기 위해서는 各法人體가 所有하고 있는 各財産種類와 項目을 最少限 過去 5年間に 걸쳐 그 實績을 細密히 追跡分析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期間과 費用의 制限때문에 그러한 方法을 止揚하고 다만 質問紙調査方法을 擇하여 調査對象者로 부터의 實質의 根據에 土臺한 判斷과 意見들을 要求하고 이를 蒐集 綜合 處理하고 解釋하는데 그치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研究에서 發見한 結果는 全的으로 客觀的 事實에 根據했다기 보다는 어느정도 想定的要素가 加味된 것임을 事전에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基礎的이며 豫意的인 性質을 띤 것으로서 보다더 綜合的이고 組織的인 研究가 앞으로 進행될 것을 前提한 豫備的 基礎研究가 되는 것이다.

Ⅱ. 理論的 背景：假說的 論據

1. 私學의 概況

1977年度 現在 私立學校 法人體數는 初等教育에 10, 中等教育에 674, 高等教育에 111로서 都合 795에 達하고 있다(표 I 참조).

〈表 I〉 私立學校法人數

學 校 別	法 人 體 數
國 民 學 校	10
中 學 校	238
高 等 學 校	436
專 門 · 初 大	55
大 學 (校)	56
計	795

資料：文教統計年報, 1976年版參照. ('76현재)

그리고 이 795法人體 傘下에는 우리나라 中等以上の 全教育에 約 折半(50.4%)을 넘는 學校와 學生들이 屬하고 있다. 即 1,974教育機關(50.0%)에 約 194萬名(50.4%)의 學生들이 私立教育機關에서 修學하고 있다. (表Ⅱ 參照) 그리고 이 194萬에 이르는 各級學校學生들을 收容 教育하기 위하여 投入된 施設들(教育用施設)을 時價(1976年基準)로 換算하면 無慮 約 6兆 3千 5百 億원에 達하고 있으며⁴⁾(表Ⅲ 參照) 教育運營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保有하고 있는 收益用基本財産도 約 1,112餘億원에 達하고 있다. (表Ⅳ 參照)

4) 韓國私學財團聯合會, 韓國教育의 當面課題와 解決의 方向—私學育成을 위한 提言—1975. p. 6

〈表 II〉 私立學校의 現況(公·私立構成比)

	學 校	學 級	學 生	教 員
中 學 校	717(36.3%)	12,818(39.3%)	848,679(40.5%)	18,798(39.1%)
高 等 學 校	590(49.2%)	12,013(55.9%)	712,068(56.8%)	21,085(54.0%)
專 門·大 學	201(69.1%)	3,389(70.1%)	232,252(71.4%)	9,135(64.1%)
其 他 學 校	466(96.3%)	3,610(93.0%)	148,267(96.5%)	5,776(93.3%)
計	1,974(50.0%)	31,830(50.6%)	1,941,266(50.4%)	54,794(50.9%)

資料：文敎部, 文敎統計年報, 1976年版에 依함

〈表 III〉 私學機關의 教育施設推定額 단위 1,000원

各 級 學 校	推 定 額
國 民 學 校	104,902,670
中 學 校	1,194,718,970
高 等 學 校	1,493,729,290
各 種 中 等 機 關	403,785,439
高 等 教 育 機 關	3,150,385,225
計	6,347,521,594

資料：韓國私學財團聯 調査資料에 依함

〈表 IV〉 私學法人 收益用基本財産 推定額 단위 1,000원

	調 査 報 告 額	推 定 額	合 計 額
國 民 學 校	3,683 (3)	8,594 (7)	12,277 (10)
中 學 校	3,046,845 (764)	1,374,796 (74)	4,421,641 (238)
高 等 學 校	23,934,747 (338)	6,939,660 (78)	30,874,407 (436)
專 門·初 大	9,232,017 (18)	18,976,924 (37)	28,208,941 (55)
大 學 (校)	20,437,952 (24)	27,250,603 (32)	47,688,555 (56)
計	56,655,244 (547)	54,550,577 (248)	111,205,821 (795)

자료：韓國私財聯調査資料에 依함. ()내수치는 法人數

2. 收益用 基本財産의 特性：規模 및 收益의 脆弱性

위에서 提示한 收益用基本財産의 總額만을 놓고 볼 때, 매우 尙大한 財産規模로 볼 수 있으나 教育用施設의 投資總額 6兆3千5百億에 比하면 約 1/60에 該當하는 것으로 教育用施設을 維持해야 할 基本財産이 도리어 相對的으로 脆弱性を 들어내 보이고 있다. 이를 每法人體別,

法人・學校・學生當 基本財産額

〈表 V〉 단위 : 1,000

	財 産 額	備 考
1 法人體 當	約 140,000	法人 795
1 個 學 校 當	約 56,000	學校 1974
中 等 學 校 當	約 20,640	1,307校 財産額 26,981,592,000
中等學生 1人當	約 17.3	1,560,747名

各學校別 學生 1人別로 換算해 보면 더욱 그 規模의 零細性이 밝히 드러난다(表V 참조). 即 1 法人體當 約 1億4千萬원, 1個學校當 約 5千6百萬원정도이며 私學의 큰 比重을 차지하는 中 高等學校를 놓고 보면 1學校當 規模는 約 2千餘萬원이고 學生 1人當으로 보면 約 1萬7千餘원 에 不過하다. 이 금액은 年公納金의 1/6 程度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額數에 該當된다.

角度를 달리하여 收益性面에서 財産構造를 들여다 보면 더욱 그 脆弱의特性을 알 수 있다. 1976年末 現在로 私學財團聯合會에서 暫定集計한 바에 依하면 다음 表 VI와 같이 나타나 있다. 이것에 依하면 垡地 林野 雜種地등 實際로 一定率의 收益이 期待될 수 없는 財産이 全體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田畝類로서 低收益이나마 期待할만한 財産은 12.1%에 不過하며 나머지 約 24%정도가 比較的 높은 收益率을 期待할만한 財産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매우 脆弱的인 特性을 지니는 基本財産은 앞으로 豫想되는 學生增加와 學校規模의 增大化에 따라 相對的으로 더욱 脆弱化될 可能性이 크며 都市에 比하여 地方小都市 및 農村에 學校를 갖고 있는 法人體의 財産은 더욱 零細性을 들어낼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基本財産의 構成上 그 脆弱性을 들어내게 된 主要理由를 指摘한다면 大體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點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表VI에서 볼수 있는 대로 法人의 基本財産의 大部分(約 76%)이 土地類로 構成되

學校法人 收益用 基本財産의 種類別 構成比

〈표 VI〉

(’76年현재)

非 收 益 性 財 産			低 收 益 性 財 産			高 收 益 性 財 産		
종류별	구성비율	%	종류별	구성비율	%	종류별	구성비율	%
대	지	21.9	답		3.0	건	물	9.3
임	야	35.5	진		3.8	주	식	9.5
잡	지	0.9	염	진	3.1	동	산	5.1
광	산	2.8	과	수	1.9	—	—	—
기	타	2.9	묘	포	0.3	—	—	—
소	계	64.0	소	계	12.1	소	계	23.9

※ 전체대상법인 795법인중 547법인(68.9%) 현황임.

어 每年 一定率의 自體의 地價上昇率은 期待할 수 있을지 모르나 收益을 올리는 데는 實際로 寄與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原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學校의 設立當時에는 비록 學校設立에 要求되는 條件에 充足할만한 財産을 保有한 다손 치더라도 해마다 增加一路에 있는 學生을 收容하기 위하여 教育用施設에만 集中 投資하는 方向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收益用財産의 增殖보다 教育用施設財의 膨大만을 招來하게 되어 基本財産의 相對的弱화를 加速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보다더 根本的인 理由는 學校法人은 어디까지나 非營利的인 公益機構로서 財産의 收益增大에 專念할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데서 招來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學校法人中에는 其間 極히 小數의 法人이 企業의인 性質을 띤 運營方式을 取하여 온 것도 事實이긴 하나 그러나 다른 一般企業體를 凌駕할만한 卓越한 經營能力을 發揮하지도 못했던 것이고 보면 學校規模의 增大에 比例하여 基本財産의 增殖을 期待한다는 것은 實質적으로 不可能한 일이라 할 것이다.

넷째로 들 수 있는 主要理由中의 하나는 私學의 財團育成을 위한 行政當局의 積極的인 支援策의 缺如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法人傘下에 있는 教育機關의 擴張과 그 規模의 增大에는 當局의 支援이 뒤따랐다고 할 수 있으나 이 機關을 維持하는 財團의 育成策에는 別로 關心이 없었던 것이다. 그 結果로 오늘날의 이와 같은 基本保有財産의 脆弱性を 必然적으로 招來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私學의 育成에는 教育機關의 育成과 並行하여 維持財團의 育成에도 힘써야 마땅했을 것이다.

3. 基本財産의 收益性 提高를 위한 몇가지 可能性의 想定

위에 指摘한 法人所有財産의 規模와 脆弱性의 그 原因들을 基礎로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財産의 收益性提高의 方向을 想定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私學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財産의 大部分이 土地類로서 非·低收益性財産 項目들인데 이를 賣却處分하여 보다더 高收益性 財産種目으로 바꾸거나 開墾 혹은 開發하여 收益을 올릴 수 있는 生産性用地로 轉換하는 方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1 法人當 平均 財産規模는 1億4千萬원 程度밖에 되지 않으나 數個法人 혹은 地域別로 法人間에 協力하는 方案이 마련될 수 있다면 相當規模의 企業資金을 出資할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因하여 安定性있는 事業을 始作할 수 있고 收益의 向上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위의 첫째와 둘째의 想定이 實現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管理技術이 要求되며 同時에 政府當局의 私學財團育成을 위한 強力한 施策이 要求된다고 볼 수 있다. 前者의 要求를 充足시키는 方案으로서는 各私學法人體의 財産管理를 爲한 委託, 代行, 諮問 등 用役專門機

構가 必要하다고 보며 後者의 要求充足을 爲해서는 法人財産의 再編成을 爲한 過渡의 特別措置와 法人負擔의 輕減策 그리고 長期低利融資를 爲한 私學振興基金의 設置等 諸施策이 實施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로, 위의 세가지 想定이 實現될 수 있다면 적어도

(1) 中高等學校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基本財産額 約 270億에 對한 20% (約54億)의 年收益을 올리 수 있을 것으로 豫見되며 이 金額은 77年度 公·私立中等學校間의 財政差額 204億圓의 約 40%를 充當할 수 있는 金額이 될 것이다.

(2) 從來보다 더 科學的이고 効率的인 財産管理方案이 法人自體 뿐 아니라 行政當局에서도 樹立될 것이다.

(3) 이렇게 되면 國內産業의 發展에도 寄與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私立校에 對한 國庫支援金을 節減하게 하며 나아가서 앞으로의 義務教育의 延長實施와 教育의 正常化에 貢獻하게 하는 效果도 見을수 있게 될 것이다.

Ⅲ. 研究方法

1. 研究對象

全國에 散在해 있는 795個의 私立學校法人을 本研究의 對象으로 잡되 中心考察의 對象은 이 法人體가 保有하고 있는 財産中 教育用財産을 除外한 收益用 基本財産이다.

이 收益用 基本財産에 對한 必要한 資料를 收集하는데 있어서 對象人員은 法人體의 財産管理에 關係하는 人士들로서 理事長 理事(學校長 包含) 財團實務擔當者(事務課長)에 限定하였다. 特히 이러한 人士들 中에서 財團運營의 實務的 責任을 擔當하는 事務課長の 應答과 協力を 얻는데 特別한 配慮를 하였다.

2. 道具(質問調査紙)

本研究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製作活用된 道具는 書面質問에 對한 反應을 要求하는 質問調査紙樣式이며 이외에 既存 文件資料들도 蒐集의 對象이 되었다. 이외에 蒐集된 資料의 分析과 解釋을 爲해서 所定の 學校法人責任者를 面接하고 協議하는 節次가 並行되기도 하였다.

本研究에 動員된 質問調査紙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質問紙樣式은 附錄參照)

質問調査紙의 構成要素

1. 反應者의 一般記載事項 4問
2. 基本財産의 現況 4問

3. 既財産의 轉換에 대한 意見 1問
4. 優先投資順位와 對策 5問
5. 其他意見..... 1問

3. 資料의 處理와 解釋

蒐集된 資料의 處理에 있어서는 問項別로 反應의 分布와 傾向을 把握하기 위하여 主로 比率(%)을 算出하여 比較檢討 및 解釋에 便利하도록 하였다.

資料의 解釋에 있어서는 既存文書資料와 研究者가 面接한 人士로 부터 얻은 意見과 質問調查紙의 處理로 發見된 事實들을 土臺로 前章에서 내세운 想定을 基準으로 重要 意味를 찾아내고 이를 綜合하여 研究者 나름대로의 提高方案을 創出해내는 節次를 取하기로 하였다.

IV. 結果와 解釋

1. 調查道具의 配付와 回收

調查道具는 全體 調查對象 795法人體에 郵便으로 配付되었다. 法人體의 財産上에 대한 質問에는 一般의으로 忌避하려는 傾向이 多分히 있음을 勘案하여 研究者는 學校法人의 聯合機構인 韓國私學財團聯合會의 協助依賴公文과 함께 發送되었다. 그렇지만 豫想한대로 그렇게 좋은 回收率은 되지 못하였다. 表Ⅶ에 나타난 바와 같이 反應率은 37.5%~78.3%의 範圍에 亘하고 있고 平均 53.5%의 比較的 낮은 應答을 나타내었다.

〈表 Ⅶ〉

調查對象 및 反應數(率)

市 道 別	配 付 對 象 數	應 答 數	應 答 率(%)
서울 特別市	148	65	43.9
釜山 市	53	25	47.2
京畿 道	118	53	44.9
江原 道	19	14	73.7
忠清 北 道	20	13	65.0
忠清 南 道	73	44	60.3
全羅 北 道	56	31	55.4
全羅 南 道	69	54	78.3
慶尙 北 道	137	74	54.0
慶尙 南 道	94	43	45.7
濟州 道	8	3	37.5
無 答 (分類不能)	—	6	—
計	795	425	53.5

2. 應答者 背景

먼저 應答한 法人體의 所在地別로 分類해 보면 大都市에 있어서 128(30.5%) 中小都市에 158(市80, 邑78)로서 37.7%, 그리고 非都市(農漁材)인 面所在地에 111(26.5%)로 각각 나타나 比較的 大都市, 中·小都市 그리고 非都市地域間에 均衡있게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蒐集된 資料는 地域的으로 일단 高루 反應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表Ⅷ 參照)

〈表 Ⅷ〉 應答學校法人體所在地分布

市 道	區 分	應答學校法人體所在地分布					計	%
		大都市	市	邑	面	無 答		
서	울	65	—	—	—	—	65	(15.5)
釜	山	24	—	—	—	1	25	(6.0)
京	畿	5	13	16	17	2	53	(12.6)
江	原	—	6	5	2	1	14	(3.3)
忠	北	—	4	2	6	1	13	(3.1)
忠	南	4	10	10	14	6	44	(10.5)
全	北	2	10	5	14	—	31	(7.4)
全	南	8	14	7	21	4	54	(12.9)
慶	北	17	13	24	17	3	74	(17.7)
慶	南	1	10	9	20	3	43	(10.3)
濟	州	2	—	—	—	1	3	(0.7)
計(%)		128 (30.5)	80 (19.1)	78 (18.6)	111 (26.5)	22 (5.3)	419 (100)	(100.0)

〈表 IX〉 財團傘下 教育機關別 法人體數(應答數別)

教育機關	市 道	財團傘下 教育機關別 法人體數(應答數別)											計(%)
		서울	釜山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國民學校		3	—	3	—	—	—	—	—	3	—	—	9(2.1)
中學校		3	5	14	4	4	13	8	17	23	12	—	103(24.6)
高等學校		7	4	3	—	—	5	2	7	9	5	—	42(10.0)
大學(專門校)		5	2	2	—	—	—	—	4	1	2	—	17(4.1)
各種學校		3	—	—	—	—	—	—	—	3	—	—	6(1.4)
(初)中·高等學校		29	6	26	9	6	19	19	21	33	23	3	194(46.3)
(初)中·高·大學		12	7	1	—	—	1	1	1	—	—	—	23(5.5)
分類不能(無答)		3	1	4	1	2	5	1	4	3	1	—	25(6.0)
計		65	25	53	14	12	44	31	54	75	43	3	419(100.0)

다음으로 反應을 表示해 온 法人體의 傘下에 있는 教育機關들을 보면 表 IX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 中學校法人이 103(24.6%) 高等學校法人이 42(10.0%) 그리고 中·高等學校法人이 194(46.3%)로서 都合 80.9%를 占하므로써 中高等學校를 運營하는 法人體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研究의 資料는 大體로 中·高等學校를 運營하는 法人體의 意見

應 答 者 職 位 別 分 布

<表 X>

(%)

	서울	釜山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理 事(長)	1	—	13	2	1	3	1	4	9	4	1	39(9.3)
校 長(監)	6	1	8	1	—	5	5	3	9	3	—	41(9.8)
事務擔當責任者	54	22	29	10	10	33	24	42	54	35	2	315(75.2)
其 他	4	2	3	1	1	3	1	5	3	1	—	24(5.7)
計	65	25	53	14	12	44	31	54	75	43	3	419(100.0)

을 代辯하고 있다고 判斷해도 無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質問紙에 直接 反應을 表示한 者의 職位別 分布狀況을 보면 理事(長) 校長 事務擔當者 등 고루 나타나 있으나 財團事務를 直接 擔當하는 者가 全體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 蒐集한 資料는 그만큼 實質的 事實에 根據한 判斷과 意見を 많이 反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表X 참조).

3. 結果 및 解釋

1) 收益用基本財産의 構造

私學法人의 基本財産은 垆地 林野 雜種地 田畚 등 土地類를 비롯하여 果樹園 苗圃場 鹽田 鑛山 등 事業場 그리고 建物 證券 및 現金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種目만을 놓고 보더라도 農林用 土地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構成率을 보면 다음의 表XI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林野(22.0%)를 비롯하여 垆地(19.5%)

<表 XI>

(問 2)

收益用基本財産의 構成比率

種 目	구성비율	구분										(%)
		5~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垆 地		87	32	17	26	9	13	8	8	4	15	219(19.5)
林 野		53	33	27	19	27	5	16	19	16	23	248(22.0)
雜 種 地		27	4	7	1	2	—	—	2	—	—	43(3.8)
田 畚		66	26	27	15	15	10	10	5	10	13	197(17.5)
果 樹 園		20	17	9	7	3	6	3	1	2	9	77(6.8)
苗 圃 場		3	—	—	—	—	—	—	1	—	—	4(0.4)
鹽 田		4	1	1	1	—	3	3	1	2	4	20(1.8)
鑛 山		3	2	2	3	5	2	—	1	1	—	19(1.7)
建 物		49	27	25	13	6	3	3	2	3	8	139(12.4)
證 券		31	5	9	3	5	2	2	3	4	8	72(6.4)
現 金		19	9	7	5	4	—	—	—	3	4	51(4.5)
其 他		6	5	2	3	4	2	3	3	—	8	36(3.2)
計(%)		368 (32.7)	161 (14.3)	133 (11.8)	96 (8.5)	80 (7.1)	56 (5.0)	48 (4.3)	46 (4.1)	45 (4.0)	92 (8.2)	1,125(100.0)

〈表 Ⅲ〉 收益性別基本財産의 構成比率

非 收 益 性		低 收 益 性		高 收 益 性	
종 목	구성비 %	종 목	구성비 %	종 목	구성비 %
垡 地	19.5	田 畚	17.5	建 物	12.4
林 野	22.0	鹽 田	1.8	證 券	6.4
雜 種 地	3.8	果 樹 園	6.8	現 金	4.5
鑛 山	1.7	苗 圃 場	0.4	—	—
其 他	3.2	—	—	—	—
小 計	50.2	小 計	26.5	小 計	23.3

田畚(17.5%) 建物(12.4%) 등이 비교적 높은 構成率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種目들은 7% 未滿의 낮은 比率를 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表Ⅱ 參照).

이를 收益性別로 區分하여 그 構成比率를 보면 垡地 林野 雜種地 鑛山등 非收益性種目에 屬하는 財産이 全體의 約 折半인 50.2%를 차지하고 있고, 田畚 鹽田 果樹園 苗圃場등 비교적 낮은 收益性을 갖는 種目이 26.5% 그리고 建物 證券 現金등 高收益을 期待할만한 種目은 23.3%에 지나지 않는다(表Ⅲ 參照). 이 構成比率는 '76년에 私財聯에서 暫定的으로 調査推計한 것(表Ⅶ)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解 釋〉

위에 나타난 基本財産의 構造面에서 볼 때 財産上의 規模에 比하여 收益率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判斷된다. 全體의 約 折半(50.2%)을 차지하는 非收益性 財産을 除外하면 實際로 收益을 올릴 수 있는 財産은 半밖에 남지 않는다. 이 折半의 收益性 財産中에서도 그 半을 훨씬 넘는 財産이 低收益性種目에 屬하고 있음을 勘案할때 全財産額에 대한 收益率은 大體로 10% 以下를 下廻할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다.

2) 基本財産의 收益率

〈結果〉 基本財産의 實收益率에 대한 結果를 보면 表Ⅲ과 같이 나타나 있다. 전혀 收益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財産만도 全財産의 28.5%에 達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가장 收益을 올리지 못하는 財産種目を 列舉해 보면 鑛山이 16(20事例中)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林野 125(204사례中) 그리고 雜種地 17(33사례中) 垡地 52(176事例中)로 각각 나타나 있다. 10% 以下の 低收益率에 屬하는 財産은 39.4%, 11~20%의 低收益率에 해당하는 재산이 12.9%, 21~30%의 高收益率에 해당되는 재산은 不過 19.2% 바게 되지 않는다. 低收益種目에는 垡地 林野 雜種地 果樹園 苗圃場 鹽田 鑛山등을 들수 있고 高收益性 種目에는 建物 證券 現金등을 꼽을 수 있다.

〈表 XIII〉 問 3. 지난 1년간('76) 收益用財産의 實收益率

재산종목	수익율	收益率							(%)
		全 無	1—5%	6—10	11—15	16—20	21—25	26—30	
垡	地	52	62	25	7	5	4	21	176(17.8)
林	野	125	38	20	4	4	2	11	204(20.7)
雜 種	地	17	8	5	—	—	1	2	33(3.3)
田	畚	31	59	37	16	9	9	31	192(19.5)
果 樹	園	8	15	21	7	5	8	13	77(7.8)
苗 圃	場	2	2	2	—	—	—	1	7(0.7)
鹽 鑛	田	4	3	8	1	1	1	3	21(2.1)
建 物	山	16	1	—	1	—	1	1	20(2.0)
證 券	物	16	25	16	9	17	10	25	115(11.7)
現 金	券	5	6	6	9	14	10	10	60(6.1)
其 他	金	2	13	6	10	6	4	14	55(5.6)
		3	7	4	—	2	1	10	27(2.7)
計(%)		281 (28.5)	23.9 (24.2)	150 (15.2)	64 (6.5)	63 (6.4)	51 (5.2)	139 (14.0)	987(100.0)

〈表 XIV〉 實收益率에 依한 收益額推定表

平均財産額	收益率(平均值)	全法人數	該當法人比率	推定額 (단위 : 1,000원)
140,000	×	0.03	×	795
140,000	×	0.08	×	795
140,000	×	0.13	×	795
140,000	×	0.18	×	795
140,000	×	0.23	×	795
140,000	×	0.28	×	795
계				10,049,987 (全財産額의 約 9%)

〈解釋〉

위의 表XIII에 나타난 結果는 表VI, VII의 財産의 構造上에 나타난 結果에 依해서도 쉽게 짐작이 갈만한 것이다. 이 收益率을 根據로 收益의 實額을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即 1法人當 平均 財産額을 1億4千萬원(表V 參照)으로 잡고 各收益率別로 차지하는 該當率의 法人數를 곱하여 보면 위와 같이 收益額이 推算된다(表XIV 參照). 即 總額이 約 100餘億원(10,049,987千원)으로서 法人總財産推定額 1,112億의 約 9%에 該當한다. 다시말해서 年間 財産額의 約 9%의 實收益을 올리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 收益率은 年間 物價高 上昇率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收益率이라고 할 것이다.

3) 教育機關運營費 補助狀況

〈結果〉 法人傘下에 있는 教育機關의 運營費 補助狀況을 보면 表XV에 들어나있는 바와 같이 “많은 補助를 하는 편”이 16.1%이고 “多少間 補助를 하는 편”이 49.2%로 가장 많으며 “必要

〈表 XV〉 問 1. 지난 1년간('76年度) 傘下教育機關에 대한 法人의 運營費補助狀況

시·도별 응답수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응답구분												
많은 보조를 함	21 (32.3)	1 (4.0)	7 (12.3)	1 (7.1)	4 (30.8)	10 (22.2)	2 (6.3)	8 (15.1)	8 (10.8)	6 (14.3)	—	68(16.1)
다소 보조를 함	26 (40.0)	12 (48.0)	35 (61.4)	8 (57.2)	3 (23.1)	19 (42.2)	21 (65.6)	26 (49.1)	43 (58.1)	14 (33.3)	1 (333)	208(49.2)
필요시 약간 보 존함	14 (21.5)	5 (20.0)	8 (14.0)	1 (7.1)	3 (23.1)	10 (22.2)	2 (6.3)	10 (18.9)	15 (20.3)	11 (26.3)	2 (66.7)	81(19.1)
전혀 보조 못함	4 (6.2)	4 (16.0)	7 (12.3)	3 (21.5)	2 (15.3)	6 (13.3)	6 (18.8)	8 (15.1)	5 (6.8)	8 (19.0)	—	53(12.5)
오히려 학교로 부터 보조 받음	—	3 (12.0)	—	1 (7.1)	1 (7.7)	—	1 (3.1)	1 (1.9)	3 (4.0)	3 (7.1)	—	13(3.1)
계(%)	65 (100.0)	25 (100.0)	57 (100.0)	14 (100.0)	13 (100.0)	45 (100.0)	32 (100.0)	53 (100.0)	74 (100.0)	42 (100.0)	3 (100.0)	423(100%)

〈表 XVI〉 問 4. 지난 1년간('76)의 학교운영비 보조 규모(收入源別) (단위 : 萬원)

金 額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無	計(%)
負擔源												
財 産 收 入	87 (23.7)	68 (18.5)	40 (10.9)	20 (5.4)	20 (5.4)	8 (2.2)	4 (1.1)	2 (0.5)	1 (0.3)	52 (14.2)	65 (17.7)	367(54.1) (100.0)
個 人 負 擔	57 (18.2)	22 (7.1)	16 (5.1)	6 (1.9)	7 (2.3)	4 (1.3)	6 (1.9)	2 (0.6)	4 (1.3)	49 (15.8)	138 (44.4)	311(45.9) (100.0)
計(%)	144 (21.2)	90 (13.3)	56 (8.3)	26 (3.8)	27 (4.0)	12 (1.8)	10 (1.5)	4 (0.6)	5 (0.7)	101 (14.9)	203 (29.9)	678(100) (100)

時에만 若干 補助를 하는 程度,가 19.1%이다. 그리고 “全혀 補助를 못하고 있음,이 12.5%에 이르며 오히려 學校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法人이 3.1%를 차지한다. 大體的으로 보아 學校維持財團으로서의 機能을 多少나마 發揮하는 法人이 約 84%에 達하는 셈이다.

이 補助金의 收入源을 보면 全體補助金의 約折半을 약간 上廻하는 54.1%가 基本財産으로부터의 收益金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45.9%는 個人負擔으로 나타나 있다. 負擔金額의 規模面에서 보면 200萬원 以下가 全體의 34.5%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微額인가를 可히 짐작할 수 있다(表XVI 參照).

〈解 釋〉

위의 表XVI를 根據로 하여 年間 學校運營費補助費의 總額을 推算해 보면 다음 表 XVII와 같이 約 25億6千萬원(2,556,145,000원)에 달한다. 이를 다시 中高等學校의 運營費補助金으로 推算해 보면 約 19億원(1,896,182,000원)에 相當한 金額이다(表 XVII參照). 이 19億원의 補助金은 中·高等學校法人財産의 年間 收益推算額 31億6千7百萬원(表 XIX參照)에 대한 約 60%에 해당하는 金額이다. 다시 말해서 中等學校法人에서는 年間財産收益金の 約 60%를 傘下學校運營補助金에 投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學校運營費 補助額推算表(全體法人)

〈表 XVIII〉

(단위 : 1,000원)

補助金(區分)	法人體數	該當法人比	推 算 額
1,000	× 765	× 0.212	= 168,540
2,000	× 795	× 0.133	= 211,470
3,000	× 795	× 0.083	= 197,955
4,000	× 795	× 0.038	= 120,840
5,000	× 795	× 0.040	= 149,000
6,000	× 795	× 0.018	= 85,860
7,000	× 795	× 0.015	= 83,475
8,000	× 795	× 0.006	= 38,160
9,000	× 795	× 0.007	= 316,295
10,000	× 795	× 0.149	= 1,184,550
計			2,556,145

學校運營費 補助額推算表(中·高校法人)

〈表 XVIII〉

(단위 : 1,000원)

補助金(區分)	法人體數	該當法人數比	推 算 額
0	× 674	× 0.299	= 0
1,000	× 674	× 0.212	= 142,888
2,000	× 674	× 0.133	= 179,284
3,000	× 674	× 0.083	= 107,826
4,000	× 674	× 0.038	= 102,448
5,000	× 674	× 0.040	= 134,800
6,000	× 674	× 0.018	= 72,792
7,000	× 674	× 0.015	= 77,070
8,000	× 674	× 0.006	= 32,352
9,000	× 674	× 0.007	= 42,462
10,000	× 674	× 0.149	= 1,004,260
계			1,896,182

〈表 XIX〉

中·高等學校法人財産의 益收額推算表

平均財産額	收益率(平均)	法 人 數	該當法人比率	推 算 額
52,000	× 0.03	× 674	× 0.240	= 252,346
52,000	× 0.08	× 674	× 0.150	= 420,576
52,000	× 0.13	× 674	× 0.065	= 296,156
52,000	× 0.18	× 674	× 0.064	= 405,063
52,000	× 0.23	× 674	× 0.052	= 419,174
52,000	× 0.28	× 674	× 0.140	= 1,373,882
계				3,167,197

4) 基本財産의 增減

〈結果〉

收益基本財産의 增減推移에 대하여 應答토록 한 結果는 表XX에 나타나 있다. 即 增減에 대한 아무런 變動이 없을 것으로 보는 便이 全體 反應의 54.2%를 차지하여 壓倒的으로 많고, 增加한 것으로 보는 便이 減少한 것으로 보는 便(15.0%) 보다 倍(30.8%)로 많다. 特히 增殖財産種目으로는 證券, 果樹園, 建物 등이고 增殖不能의 財産種目으로는 雜種地, 苗圃場, 鑛山, 鹽田등이 指摘되고 있다.

〈表 XX〉 問 5. 收益用基本財産의 增減狀況

	垆地	林野	雜種地	田畝	果樹園	苗圃場	鹽田	鑛山	建物	證券	現金	其他	計
增 加	53 (28.0)	68 (31.5)	1 (2.9)	47 (24.8)	38 (48.8)	1 (25.0)	3 (16.7)	1 (5.9)	40 (33.3)	38 (52.1)	11 (22.0)	13 (44.8)	314 (30.8)
不 變	114 (60.4)	120 (55.6)	25 (71.4)	117 (62.0)	27 (34.6)	—	14 (77.8)	10 (58.8)	58 (48.4)	33 (45.2)	27 (54.0)	6 (20.7)	551 (542)
減 少	22 (11.6)	28 (12.9)	9 (25.7)	25 (13.2)	13 (16.6)	3 (75.0)	1 (5.5)	6 (35.3)	22 (18.3)	2 (2.7)	12 (24.0)	10 (34.5)	153 (15.0)
計	189 (100.0)	216 (100.0)	35 (100.0)	189 (100.0)	78 (100.0)	4 (100.0)	18 (100.0)	17 (100.0)	120 (100.0)	73 (100.0)	50 (100.0)	29 (100.0)	1,018 (100.0)

〈解釋〉

大體的으로 學校法人의 財産은 나타난 種目만으로 보아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갈 수 있는 바와 같이 增減에 큰 起伏이 없는 財産들이라고 볼 수 있다. 增加에 대한 反應이 減少에 대한 反應보다 높게 나타나 있음은 그만큼 樂觀視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種目上으로 볼때 財産自體의 높은 收益性에 依하기 보다 外的 與件 即 인푸레에 따른 不動産의 自體價格의 自然增殖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財産의 轉換與否와 優先투자種目

〈結果〉

免稅措置가 뒤따른다는 條件下에 現保有財産을 他種目的 財産으로 轉換시킬 意思가 있느냐 없느냐를 打診하기 위한 목적으로 묻는 말에 대하여 다음 〈表 XXI〉와 같이 應答하고 있다.

〈表 XXI〉 問 7-1 免稅時 現保有財産의 轉換與否

轉換與否	種目	垆地	林野	雜種地	田畝	果樹園	苗圃場	鹽田	鑛産	建物	株式	其他	計(%)
轉 換 한 다		127 (71.0)	162 (75.7)	29 (76.3)	128 (72.0)	24 (34.3)	9 (81.8)	10 (58.8)	15 (71.4)	58 (56.3)	18 (41.9)	22 (59.5)	602 (66.1)
轉 換 않 한 다		52 (29.0)	52 (24.3)	9 (23.7)	50 (28.0)	46 (65.7)	2 (18.2)	7 (41.2)	6 (28.6)	45 (43.7)	25 (58.1)	51 (40.5)	309 (33.9)
計		179 (100.0)	214 (100.0)	38 (100.0)	178 (100.0)	70 (100.0)	11 (100.0)	17 (100.0)	21 (100.0)	103 (100.0)	43 (100.0)	37 (100.0)	911 (100.0)

〈表 XXII〉 問 7-2 財産轉換에 따른 優先投資順位

投資種目	우선순위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계
株式買入		86	37	44	167(18.6)
債券買入		11	29	22	62(6.9)
現金信託		36	39	47	122(13.6)
建物買入		65	49	32	146(16.3)
宅地買入		22	38	24	84(9.4)
土地買入		52	55	44	151(16.8)
開發事業		26	26	32	84(9.4)
會社設立		28	24	37	81(9.0)
其他			1		1(0.1)
計(%)		318 (35.4)	298 (33.2)	282 (31.4)	898(100.0) (100.0)

肯定的反應對否定的反應의比率은 66.1% : 33.9%로 壓倒的으로 轉換하겠다는 肯定的의意思를 表明하고 있다. 특히 轉換希望 種目中 苗圃場, 雜種地, 林野, 鑛山 및 垆地등은 매우 強하게 轉換意思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에 對하여 株式과 果樹園의 두 種目は 轉換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強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財産轉換에 따른 優先投資順位別 種目に 대한 反應을 보면 〈表 XXII〉와 같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順位別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種目들을 들어보면 제 1 順位에 株式買入, 建物買入, 土地買入 등이고, 제 2 順位 種目에는 土地, 建物, 現金信託 등이고, 제 3 順位種目에는 現金信託, 株式, 土地, 會社設立 등으로 各各 나타나 있다. 全體的으로 가장 많은 反應을 나타낸 種目들을 보면 株式(18.6%) 土地(16.8%) 建物(16.3%) 그리고 現金信託(13.6%)의 順位로 되어 있다.

〈解釋〉

株式과 果樹園을 除外한 全種目的 財産에 대하여 轉換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轉換의 主要對象으로서 現金信託, 株式 債券등 有價證券에 많은 關心을 쏟고 있다(約 39%). 다음으로 收益性이 比較的 높을 것으로 期待되는 建物에 쏠리고 있다(16.3%). 그 다음에 土地買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16.8%) 現保有財産의 大部分이 土地類로 構成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여전히 投資를 생각하고 있음은 아이로니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아마도 앞으로 如前히 不動産景氣가 좋을 것이라는 推測이 크게 作用한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으로 생각컨대 比較的 모험이 따르는 企業運營에 投資하느니 보다 安全性이 保障되는 有價證券, 建物, 土地등에 관심을 많이 쏟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6) 餘裕資金의 規模別 投資希望種目

餘裕資金의 規模別(500萬원, 1,000萬원, 5,000萬원, 8,000萬원, 10,000萬원이상) 投資希望種目的 選好傾向은 <表XXIII>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1,000萬원 以下の 資金에는 株式買入 現金信託(定期預金)에, 5,000萬원~10,000萬원 未滿의 資金에는 株式과 建物買入에, 그리고 1億 원以上の 資金에는 會社設立과 建物買入에 各各 投資할 것을 希望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보면 株式買入, 建物買入 그리고 會社設立의 順位로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XXIII> 問.6. 餘裕資金別 優先投資 種目

資 金	投資種目	定期 預金	債券 買入	現金 信託	株式 買入	建物 買入	宅地 買入	土地 買入	土地 開墾	會社 設立	其他	計(%)
500萬원		72	9	40	47	20	12	38	12	1	3	254(17.0)
1,000 "		31	19	39	67	32	1	29	16	1	4	252(16.9)
5,000 "		19	7	22	70	58	23	43	17	9	4	272(18.3)
8,000 "		17	4	15	51	40	16	32	27	19	1	222(14.9)
10,000 "		16	3	9	45	54	6	30	18	69	2	252(16.9)
10,000+		15	2	9	30	43	6	15	17	100	2	238(16.0)
計(%)		170 (11.4)	44 (2.9)	134 (9.0)	310 (20.8)	247 (16.6)	77 (5.2)	187 (12.6)	107 (7.2)	199 (13.4)	15 (1.0)	1,490(100.0)

<解 釋>

여기에서도 財産轉換에 따른 優先投資種目(表 XXII)에 나타난 바와 비슷하게 株式과 建物 買入에 많이 集中되어 있다. 다만 다른 點이 있다면 土地買入 대신 會社設立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點이다. 이것은 基本財産의 轉換이 아니라 餘裕資金의 運用이란 點에서 多少 모형이 따르는 企業에 果敢하게 投資하려는 것이라 풀이 할 수 있다. 大體的으로 收益性種目 으로는 株式과 建物買入 그리고 現金信託등을 손꼽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融資金의 希望與否와 優先活用順位

<結 果>

大部分의 法人體가 長期融資를 希望하고 있다. 即 全體 應答者의 82.5%가 融資의 必要를 切感하고 있다(表 XXIV參照). 融資金의 活用に 대한 優先順位別 選擇種目들을 보면 <表XXV> 와 같이 나타나 있다. 大體로 두드러지게 많은 反應을 表示한 것을 들어보면 제 1順位에 있

<表 XXIV> 8-1 融資必要與否

應答區分	應 答	數	%
응 자 받 음		340	82.5
응 자 않 받 음		63	15.3
無 答		9	2.2
計		412	100.0

〈表 XXV〉 問 8-2

融資金의 優先投入順位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計(%)
林野開墾	40	22	27	89 (9.6)
鑛山開發	—	3	5	8 (0.8)
資材購入	11	12	14	37 (4.0)
畜産事業	20	23	19	62 (6.7)
事業擴張	57	28	24	109(11.7)
宅地造成	18	38	25	81 (8.7)
建築	95	62	29	186(20.0)
果樹園藝	22	29	54	105(11.1)
新規事業	56	41	53	150(16.1)
其他	2	6	3	11 (1.9)
無答	—	—	—	93(10.0)
計(%)	321 (34.5)	264 (28.3)	253 (27.2)	931 (100.0)

어서 建築(95), 事業擴張(57), 新規事業投資(56), 林野開墾(40) 등이고 제 2 順位에 있어서 建築(62), 新規事業(41), 宅地造成(38), 그리고 제 3 順位에 있어서 果樹, 園藝事業(54), 新規事業(53), 建築(29) 등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全體的으로 보면 建築(20.0%), 新規事業(16.1%), 事業擴張(11.7%), 果樹園藝(11.3%) 등의 차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林野開墾에도 比較的 많은 反應(9.6%)을 나타내고 있다.

〈解釋〉

거의 大部分의 應答者가 融資金의 必要를 切減하고 있음은 이미 法人所有財産規模의 零細性이나 低收益性 혹은 脆弱性으로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로서 매우 資金을 渴望하는 狀態에 있다고 해석된다. 融資金의 使用目的 對象 種目に 있어서 建築에 많은 集中率을 보이고 있음은 그 만큼 建物施設의 不足狀態에 있음을 間接的으로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新規事業과 現事業의 擴張을 위한 投資에 대한 希望은 그만큼 收益事業에 대한 意慾이 強함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 理解되며 또 果樹園藝 및 林野開墾에 대한 投資希望의 表示는 法人의 基本財産構成面에서 그 만큼 이 種類의 財産比重이 크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長期投資에 의한 收益增大 事業의 對象種目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8) 收益性提高의 阻害要因과 收益增大 方案

收益性を 提高시키는데 있어서 阻害되는 要因들에 대하여 順位別로 指摘하도록 하였던 바 그 反應의 結果는 다음의 〈表 XXVI〉와 같이 나타났다. 主要阻害要因으로는 財産管理技術의 不足, 低收益性財産, 當局의 高率課稅, 法的制限, 財産規模의 零細性, 讓渡(贈與)稅의 課稅 등 6 가지가 指摘되었는데 그중에서 첫째 順位에 低收益性財産, 둘째 順位에 法的制限性과 財産規

〈表 XXVI〉 問 9. 財産收益提高의 阻害要因 順位

原 因	順位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무	計(%)
經營技術不足		18	29	58		105 (9.6)
低收益性財産		146	66	38		250(22.7)
高率課稅		34	39	53		126(11.5)
法的制限		53	88	66		207(18.8)
財産規模零細性		77	82	54		213(19.4)
財産贈與課稅		34	38	49		121(11.0)
無	答	—	—	—	77	77 (7.0)
計(%)		362 (32.9)	342 (31.1)	318 (28.9)	77 (7.0)	1,099(100.0)

〈表 XXVII〉 問 10. 收益性增大 및 增殖方案(順位別)

方 案	順位	제 1 순위	제 2 순위	제 3 순위	무	계	비 고
新規上場株의 우선 배정		49	23	25		97 (8.6)	
재산 관리 전문 자문기관 설치		24	24	32		80 (7.1)	
재산 관리 전문 대행기관 설치		31	23	32		86 (7.7)	
共同 출자 사업체 설립		28	23	37		83 (7.4)	
지역별 공동 출자 회사 설립		5	15	30		50 (4.4)	
私學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101	90	57		248(22.1)	
사학 육성 기금 설치		116	114	45		275(24.5)	
財産供與에 대한 免稅		38	47	89		174(15.5)	
無	答				31	31 (2.8)	
計(%)		387 (34.2)	359 (32.0)	347 (31.0)	(2.8)	1,124 (100.0)	

模의 零細性, 그리고 셋째順位에 法的制限性과 經營技術의 不足을 各各 들고 있다. 全體的으로 보면 低收益性 財産(22.7%), 財産規模의 零細性(19.4%), 法的 制限性(18.8%) 등의 諸要因을 크게 指摘하고 있다.

收益性的 增大方案에 대한 反應의 結果는 (表 XXVII)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 ① 新規上場株式의 優先配定, ② 財産管理諮問機關의 設置 ③ 財産管理專門代行機關의 設置 ④ 共同出資事業體의 設立 ⑤ 地域別 共同出資會社 設立 ⑥ 私學에 대한 長期低利融資 ⑦ 私學育成基金設置 ⑧ 財産供與에 대한 免稅 등 8가지 方案에 걸쳐 優先順位別로 가장 많이 指摘한 頻度數를 基準으로 보면 첫째 順位에 私學育成基金設置와 私學에 대한 長期低利融資를 들었고, 둘째 順位에도 제 1 順位와 同一하게 私學育成基金과 長期低利融資를 들었고 셋째 順位에는 財産供與에 대한 免稅와 또 如前히 長期低利融資를 指摘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收益性 提高의 方案은 當局의 育成基金의 設置에 의한 長期低利融資와 稅金의 輕減措置이라고 할 수 있다.

〈解 釋〉

以上에 나타난 收益性提高의 阻害要因과 收益性提高 方案에 대한 結果를 놓고 볼때 法人所有 財産의 規模가 적고 零細한데다 까다로운 法的規制와 高率의 各種稅金의 과세가 따르기 때문에 收益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原因을 除去하는 方案이 收益性 提高의 捷徑이라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財産의 零細성과 低收益성을 克服하기 위하여 私學育成基金과 低利融資가 要求되며 同時에 外部로 부터 財産을 供與받을 때에 免稅措置가 必要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收益性提高의 阻害要因으로 經營技術의 不足과 財産規模의 零細성을 指摘한데 대하여 財産管理諮問(代行) 專問機關의 設치와 共同出資會社의 設立등의 方案을 提示함은 매우 有關性있는 積極的 對案이라 할 수 있으나 反應의 頻度數로 볼때 當局에 대한 對案을 要望하는 消極策에 지나치게 偏重되어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에 留意해야 할 것 같다.

9) 其他의 提言事項

〈結 果〉

基本財産의 收益增大方案에 대한 質問에 있어서 應答上 아무런 制限條件을 두지 않고 反應하도록 하였던바 反應者 나름대로 區區한 方案들이 나타났는데 그 中 頻度가 가장 많이 表示된 것만을 추려서 整理한 結果 다음 <表 XXVIII>와 같이 나타났다. 即 法人體 所得에 대한 稅金의 輕減(29), 私學育成支援金의 融資(18), 그리고 現財産의 轉換에 따르는 行政節次 및 規制의 緩和(12) 그리고 稅金의 免除(7) 등이 指摘되고 있다.

<表 XXVIII> 문 11 其他提言事項

1. 學校法人體의 所得에 대한 減稅(특은 免稅)	29
2. 私學育成을 위한 支援金(金庫)	18
3. 現基本財産의 高收益性財産으로의 轉換에 따른 支援(行政協調, 規制緩和, 先轉換後承認制 등)	12
4. 財産의 轉換時에 따른 稅金免除	7
5. 其 他	9
(ㄱ) 收益金의 再投資措置	
(ㄴ) 年金 및 負擔金의 校費에서 支出	
(ㄷ) 財産管理專門機關	
(ㄹ) 法人의 完全裁量權	
(ㄺ) 法人共同出資 및 消費(協力體)	

〈解 釋〉

이러한 結果는 바로 앞의 質問(10)에 나타난 結果(表 XXVII)와 基本的으로 다를 것이 없고 그것을 더욱 補完해 주는 提案에 不遇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財産에 賦課하는 稅金에 대한 減免措置와 融資가 어느만큼 切實히 要望되는가를 可히 짐작할 수 있다.

10) 要 約

以上の 9項目에 單한 反應結果들을 單單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私學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收益用基本財産은 農林用土地(全體의 70.1%)로 大部分 構成되어 있으며 折半以上(50.2%)이 非收益性 財産이고 高收益性 財産은 23.3%에 不過하다.

(2) 이 基本財産의 收益率을 보면 無收益財産이 28.5%를 차지하고 10% 以下の 收益을 내는 재산은 39.4%이고 21~30%의 高率收益재산은 19.2%에 不過하다. 이 收益率에 依하여 實收益額을 推算해 보면 全財産의 約 9%에 該當하는 100餘億원에 不過하다.

(3) 法人傘下教育機關에 對한 補助狀況을 보면 無補助 12.4%, 補助 65.3% 必要時 補助 19.1%, 學校財政으로 부터 逆補助받는 것이 3.1%로 나타났고 補助金의 支出源은 財産收入에서 54.1% 個人負擔에서 45.9%으로 되어 있다. 이 補助金額을 中等學校法人을 基準으로 換算해 보면 收益金 約 31億원의 60%에 해당되는 約 19億원정도이다.

(4) 基本財産의 增減상황에 對하여 재산의 約折半이 넘는 54.2%가 아무런 變化가 없었고 0.8%의 재산은 증가한데 對하여 15.0%는 오히려 減少를 나타내고 있다. 증가재산 種목은 證券 果樹園 및 建物이고 減少種目은 雜種地 苗圃場 鑛山 및 鹽田등으로 非收益性 財産에 속하는 것들이다.

(5) 現保有財産에 對하여 約 66%가 轉換하기를 希望하고 있는데 轉換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株式과 果樹園을 除外하고는 全種目이 轉換하기를 바라는 쪽에 더 偏重되어 있다. 財産轉換에 따른 優先投資希望 種目에는 株式 土地 建物 現金信託등이 指摘되고 있다.

(6) 餘裕資金의 規模別 優先投資希望種目에는 1,000萬원以下에 株式 現金信託을, 5,000萬원~1億원以下에 株式과 建物을, 그리고 1億원 以上에 會社設立과 建物買入에 의사를 크게 표시하고 있다.

(7) 大部分(82.5%)이 長期低利融資金을 希望하고 있으며 融資金의 主要 投資對象은 建築(20%), 新規事業의 投資 혹은 事業擴張(27.8%), 果樹園藝(11.3%) 그리고 林野開墾(9.6%) 등이다.

(8) 現財産의 收益性阻害의 主要因은 低收益性 財産과 財産規模의 零細性(42.1%), 高率課稅(22.5%) 그리고 지나친 法的制限(18.8%)이며 要望되는 收益增大方案에는 私學育成基金의 設置와 長期低利融資(46.6%), 稅金의 減免(15.5%), 財産管理專門機關의 設置(14.8%) 그리고 共同出資(11.8%)등을 들고 있다.

(9) 其他의 意見도 融資와 各種稅金의 減免등에 集中되고 있다.

위에 要約한 結果를 基礎로 判斷하건대 앞(II장)에서 내세운 몇가지 想定들을 어느정도 充足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高收益性 財産으로의 轉換에 對한 想定: 現保有財産의 構造, 收益率, 傘下教育機關에

대한 低額의 補助 그리고 66% 以上の 轉換希望등의 諸事實은 이를 充分히 立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零細資産規模의 克服과 安定性있는 事業投資에 대한 想定: 餘裕資金規模別 投資優先種目的 選擇(1億以上の 投資種目)과 收益性 增大方案의 取擇중목(共同出資方案)에 나타난 結果는 이 想定을 어느정도 充足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合理的 財産管理能力의 必要性和 行政當局의 政策的 支援에 대한 想定: 收益性 增大方案의 하나로 財産管理專門(諮問 혹은 代行)用役機構의 設置와 運營의 必要性(14.8%) 育成基金의 設置와 融資(46.6%) 稅金의 減免(15.5%) 그 외에 其他 提言의 反應率등의 諸結果는 이 想定을 充分히 立證할 수 있다고 본다.

(4) 財産運營의 展望에 대한 想定: 現收益率(財産額에 대한 9% 水準)은 年物價上昇率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低收益率로서 위의 세가지 想定이 實現될 수 있다면 20%의 收益率 提高와 法人自體의 管理力強化와 當局의 合理的 管理指導策이 樹立될 수 있고 教育正常化에의 貢獻도 確實視된다고 展望할 수 있다.

V. 結 論

1. 要 約

私學法人基本財産의 收益性 提高方案을 豫意的으로 찾아내기 위한 本研究는 收益用基本財産과 財團運用に 직접 참여하는 人士를 主對象으로 主로 質問調査紙를 利用하여 推進하였다. 全國의 795個 法人體中 425法人體에 관계하는 人士(53.5%)가 本調査에 反應해 왔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私學法人基本財産의 大部分(70.1%)은 農林用土地로 構成되어 있으며 非低益性種目的 財産이 76.7%를 占하고 있고, 매우 낮은 收益을 올리고 있다(무수익 28.5%, 10%未滿의 收益 39.4%) 따라서 學校運營費의 補助도 아주 微弱하다(中·高等學校의 경우 約 19億원으로 推算됨). 財産의 增殖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增加는 30%에 不過).

(2) 現財産에 대한 보다 더 高收益性財産種目으로의 轉換이 切感되고 있으며 優先投資種目으로는 株式, 建物, 土地, 會社設立 등이 指摘되고 있다.

(3) 收益性阻害要因으로는 財産의 低收益性和 規模의 零細性, 當局의 法的制限, 高率課稅, 管理技術의 不足 등이 指摘되고 있으며 收益性增大方案으로는 私學育成 基金設置와 融資, 共同出資와 專門用役機構의 設置, 그리고 稅金의 減免策 등이 要望되고 있다.

以上の 結果는 이미 本研究에서 내세운 想定을 直接 間接的으로 充足시킬만한 必要 要件들

을 充分히 提示하고 있다고 結論지을수 있다.

2. 提 言

本研究는 이미 그 目的과 限界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後續研究를 前提로 한 豫備的 研究 (Preliminary Research)의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위에서 얻은 結果와 解釋, 그리고 想定의 立證에 立脚하여 예의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提言을 한다.

現法人財産의 收益性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

첫째 現基本財産을 高收益性財産種目으로 改編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過渡的 諸措置와 各種支援策이 當局으로 부터 取하여 질것이 要望된다.

둘째, 私學法人은 財産規模의 零細性을 克服하고 同時에 最少限의 必要한 適正資本力을 動員하기 위해서는 融資以外에 法人間의 協力에 의한 共同出資의 方案을 摸索할 必要가 있다.

셋째, 私學의 長期的이고 持續的인 收益提高와 緊急한 教育設備을 위하여 私學育成 特別基金에 의한 長期低利融資가 可能하도록 當局의 政策이 立案 推進될 必要가 있다.

넷째, 私學法人의 經營力을 強化하기 위한 方案으로 專門的財産管理用役機構를 設置運營할 必要가 있다.

參 考 文 獻

- 大韓私立中高等學校長會, 韓國의 私學, 서울; 民衆書館, 1974
- 李亨行, “私學의 行政과 財政”, 國家發展과 私學의 所任(教育심포지움), 서울; 高麗大學校教育大學院, 1975
- 鄭鎮環, 私立中·高等學校의 財政構造 및 教育費에 關한 分析의 研究, (碩士論文), 서울大學校教育大學院, 1973
- 崔志雲, “私學財政問題解決의 方向” 講演集, 서울: 私財聯, 1977
- _____, “總力安保를 爲한 私學政策” 自主國防과 教育政策심포지움, 서울: 私財聯, 1977
- 韓國私學財團聯合會, 韓國教育의 當面課題와 解決의 方向: 私學育成을 中心으로, 서울: 私財聯, 1975
- _____, 韓國私學財團聯合會機構: 私學機關現況, 서울; 私財聯, 1977
- _____, 教育正常化를 爲한 私學財政問題解決의 方向: 私學金庫設置를 위한 提言, 서울: 私財聯, 1977
- _____, 義務教育延長(中學校까지)에 따른 教育費追加規模와 그 對策, 서울: 私財聯, 1977
- 韓國教育開發院, 私立中·高等學校運營刷新方案研究, 서울; 教育開發院, 1974
- 全國私立學校審議會連合會, 私立學校審議會關係實態集錄, 昭和50年度

設 問 紙

_____ 貴 下

晝夜로 教育事業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深甚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私學法人이 共通하게 直面하고 있는 財政不足問題를 解決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學校法人 所有財産의 收益性 提高方案에 對하여 여러분의 高見을 듣고저 設問紙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先生님 한분의 高見은 우리 私學의 正常的運營에 도움이 됨은 勿論, 韓國 教育全體의 發展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先生님의 高見과 助言을 要望합니다.

1977. 7

研究者 崔 志 雲 올림

崔志雲教授의 研究는 우리 私學의 發展뿐 아니라 韓國教育의 發展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되오니 財團理事長님께서 이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社團法人 韓國私學財團聯合會長 金 炳 三

記載事項: 該當欄에 √표 하시오.

1. 法人의 所在市道

서울_____ 釜山_____ 京畿_____ 江原_____ 忠北_____ 忠南_____

全北_____ 全南_____ 慶北_____ 慶南_____ 濟州_____

2. 學校法人의 所在地

大都市_____ 市_____ 邑(郡)_____ 面_____ ()_____

3. 法人傘下의 教育機關

國民學校_____ 中學校_____ 高等學校(人文)_____ (實業)_____

專門學校_____ 大學(校)_____ 專修學校_____ 其他各種學校_____

幼稚園_____

4. 應答者

1) 職 位: 理事長_____ 理事_____ 校長_____ 校監_____ 庶務課長_____

財團事務擔當者_____ ()_____

2) 在職年數: _____年

(設)

(問)

1. 지난 1年동안(76年度) 貴學校法人에서 傘下教育機關의 運營에 어느정도 財政的 補助를 하였습니까? (該當欄에 √표를 할 것)

- () 1. 많은 補助를 하였다.
- () 2. 多少 補助를 하였다.
- () 3. 緊要할 때만 약간씩 補助를 하였다.
- () 4. 전혀 補助하지 못했다.
- () 5. 오히려 學校豫算에서 補助를 받고 있다.

展 望	區 分	垆地	林野	雜種地	田畚	果樹園	苗圃場	鹽田	鑛山	建物	株式(證券)	現金
앞으로 收益이 減少될 것이다												
별차이 없다												
收益이 增加될 것이다												

6. 만일 貴法人에 500만원~1億원 以上の 餘裕資金이 있다면 資金의 增殖(利益)을 위하여 다음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投資하겠습니까? (該當欄에 √표하십시오)

金 額	區 分	定期預金	債券買入	現金信託	株式投資	建物(建築)買入	宅地買入	土地買入	土地開發事業	會社設立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1億원												
1億以上												

(各項目別로 하나씩만 擇하십시오)

7. 만일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가 免除된다고 하면 貴法人에서 所有하고 있는 低收益性財産을 賣却하여 보다더 收益性있는 財産으로 轉換할 意思가 있습니까? (다음의 財産項目別로 答해 주십시오)

7-1)

轉換與否	財産區分	垆地	林野	雜種地	田畚	果樹園	苗圃場	鹽田	鑛山	建物	株式	
轉換하겠다												
轉換하지 않겠다												

7-2) 만일 轉換하신다면 어떠한 收益財産으로 轉換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 세개만 擇하여 "1", "2", "3"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株式投資 () 債券買入 () 現金信託 () 建物(建築)買入
 () 宅地買入 () 土地買入 () 開發事業投資 () 會社設立
 () _____ () _____

8. 만일 長期低利融資가 可能하다면 貴法人에서는 收益事業을 위하여 融資받으실 意思(必要)가 있습니까?

8-1) 融資받겠다 _____, 融資받지 않겠다(必要없다) _____

8-2) 融資받으시겠다면 어떠한 目的을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우선순위 3개만 擇하여 "1", "2", "3"

“4” “5”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林野(雜種地)開墾 | <input type="checkbox"/> 鑛山開發 | <input type="checkbox"/> 資材購入 |
| <input type="checkbox"/> 畜産 | <input type="checkbox"/> 現事業擴張投資 | <input type="checkbox"/> 宅地造成 |
| <input type="checkbox"/> 建築 | <input type="checkbox"/> 果樹(園藝)事業投資 | <input type="checkbox"/> 新規事業投資 |
| <input type="checkbox"/> _____ | <input type="checkbox"/> _____ | <input type="checkbox"/> _____ |

9. 財産管理(收益性向上)에 있어서 가장 不足한 點(或은 沮害要因)은 무엇입니까? (3개만 택하셔서 “1”, “2”, “3”으로 순위를 표해 주십시오)

- 經營技術(能力)의 不足때문에
- 低收益性財産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 事業에 對한 高率課稅때문에
- 財産運用에 있어서 法的制限이 있기 때문에
- 財産規模의 零細性때문에
- 寄附金, 或은 財産供與에 對한 課稅 或은 統制때문에
- _____
- _____

10. 앞으로 私學法人體 所有財産의 收益增大와 増殖을 效率的으로 圖謀하기 위하여 어떠한 對策이 切實히 要請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事項中 가장 必要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3개만 擇하여 “1”, “2”, “3”으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 新規上場企業의 株式을 私學法人에 우선적으로 配定하는 일
- 私學法人財産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助言을 베풀 수 있는 專門諮問機關의 設置
- 私學法人 財産의 效率的인 管理와 増殖을 위한 專門代行機關(共同管理體)의 設置
- 私學法人 共同出資에 의한 事業體 設立
- 地域別 共同出資會社 設立
- 政府當局의 私學에 對한 長期低利融資 擴大
- 私學育成基金(金庫)의 設置
- 財産供與 或은 引受에 따른 免稅措置
- 其 他 _____

11. 其他 私學法人財産의 收益率 增大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생각되시는 意見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입요망)

<감사합니다>

Preliminary Survey for Improving The Mangement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

Choe, Jee Woon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how to make a profit on the basic foundations of private schools. It is based on written inquires answered by those who engage in management of basic property and foundations for a profit. Of the 795 foundations in Korea, 425(53.5%) answered the inquire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 1.) The majority of basic properties owned by private schools consists of land for agriculture. The rate of non-low profitable items is 76.7% (the rate of non-profitable items is 28.5%; the rate of 10% below profitable items, 39.4%). Therefore, the subsidy is small (estimated 1.9 billion won in the Middle & High School). These properties do not increase rapidly and the rate of increase is barely 30%.
- 2.)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present properties to high profitable items, whose primary investment are stock trading, building, land, and establishing companies.
- 3.) One of the big hindrances to making a profit is thought to be the low-return on income, small-scale management, high tax rate and the lack of management techniques. One of the ways to increase profit is to secure funds to support private schools, make joint investment, establish a joint service organization, and to have loan and tax reduction.

Suggestions

The object of this preport with the preliminary research and on the premise of succeeding studies is to propose some suggestions based of the above conclusion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present basic properties be converted to high profitable items, and the transitional measures and positive support should come from the govern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methods of joint investment and various loan procedures available to be able to emerge from the small-scale foundations of private

schools.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private schools with long term, low interest loans which will enable the private educational foundations to make a continuous profit while establishing educational facil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will reinforce the management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